|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생산안전 위해(危害) 형사사건 처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생산안전 위해(危害) 형사사건 처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 2015년 11월 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65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됨과 더불어 2015년 12월 9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2기 검찰위원회 제44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2015년 12월 14일법에 따라 생산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징계 및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형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생산안전 위해(危害) 형사사건 처리의 몇가지 법률적용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제1조 형법 제134조 제1항에 규정한 범죄주체에는 생산•작업에 대한 계획, 지휘 또는 관리의 직책이 있는 책임자, 관리인력, 실제통제인, 투자자 등과 직접적으로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된다.제2조 형법 제134조 제2항에 규정한 범죄주체에는 생산•작업에 대한 계획, 지휘 또는 관리의 직책이 있는 책임자, 관리인력, 실제통제인, 투자자 등이 포함된다.제3조 형법 제135조에 규정한 '직접 담당하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라 함은 안전생산시설 또는 안전생산조건이 국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황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생산경영업체의 챔임자, 관리인력, 실제통제인, 투자자 및 안전생산시설 또는 기타 안전생산조건 관리•유지보수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를 지칭한다.제4조 형법 제139조 제1항에 규정한 '보고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라 함은 계획, 지휘 또는 관리의 직책을 맡고 있는 책임자, 관리인력, 실제통제인, 투자자 및 기타 보고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를 지칭한다.제5조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 작업 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실시한 경우 형법 제134조 제2항에 규정한 '타인에게 규정에 위반되는 위험업무를 강요'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1) 계획, 지휘, 관리의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규정에 위반되는 업무를 강요한 경우;(2) 위협, 협박, 공갈 등 수단으로 타인에게 규정에 위반되는 업무를 강요한 경우;(3) 의도적으로 사고 위험 요인을 숨기고 타인을 위험업무에 투입시킨 경우;(4) 타인에게 규정에 위반되는 위험업무를 강요하는 기타 행위.제6조 형법 제132조, 제134조 제1항, 제135조, 제135조(1), 제136조, 제139조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각한 결과 초래' 또는 '중대한 사상사고 발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 초래'로 인정하여야 하며 관련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단기징역형에 처하여야 한다.(1)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2) 100만위안 이상의 직접적 경제손실이 초래된 경우;(3) 기타 심각한 결과 또는 중대 안전사고를 초래한 경우.형법 제134조 제2항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중대한 사상사고 발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 초래'로 인정하여야 하며 관련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하여야 한다.형법 제137조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중대 안전사고 초래'로 인정하여야 하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단기징역형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여야 한다.형법 제138조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중대한 사상사고 발생'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단기징역형에 처하여야 한다.제7조 형법 제132조, 제134조 제1항, 제135조, 제135조(1), 제36조, 제139조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책임자를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1)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0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사고에 대해 주요 책임이 있는 경우;(2) 500만위안 이상의 직접적 경제손실이 초래되었고 사고에 대해 주요 책임이 있는 경우;(3)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경위가 특별히 악랄하거나 결과가 특별히 심각한 기타의 경우.형법 제134조 제2항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책임자를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형법 제137조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형법 제138조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1)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0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사고에 대해 주요 책임이 있는 경우;(2) 본 해석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고 500만위안 이상의 직접적 경제손실이 초래되었으며 사고에 대해 주요 책임이 있고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제8조 안전사고 발생 후 보고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가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의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 긴급구조가 지체되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형법 제139조(1)에 규정한 '경위가 심각'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1) 사고의 결과가 확대되어 사망자가 1명 이상 늘어났거나 중상자가 3명 이상 늘어났거나 직접적 경제손실이 100만위안 이상 증가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적시에 효율적인 사고 긴급구조를 취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① 사고의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거나 보고를 지체하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관계자와 결탁하여 사고의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지체하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계자에게 사고의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지체하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도록 지시한 경우;② 사고 긴급구조 기간에 무단으로 직무를 이탈하거나 도주한 경우;③ 사고현장을 조작, 파괴하거나 사망자의 시체를 이동, 은닉, 훼손하거나 부상자를 이동, 은닉한 경우;④ 사고와 연관된 도면, 기록, 컴퓨터 데이터 등 자료와 기타 증거를 훼손, 조작, 은닉한 경우;(3) 경위가 심각한 기타의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형법 제139조(1)에 규정한 '경위가 특별히 심각'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1) 사고의 결과가 확대되어 사망자가 3명 이상 늘어났거나 중상자가 10명 이상 늘어났거나 직접적 경제손실이 500만위안 이상 증가한 경우;(2) 폭력, 협박, 명령 등 방식으로 타인의 사고 상황 보고를 저지함으로 인해 사고의 결과가 확대된 경우;(3) 경위가 특별히 심각한 기타 경우.제9조 안전사고 발생 후 보고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와 결탁하여 사고의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사고 긴급구조가 지체되었고 그 경위가 심각한 경우 형법 제139조(1)의 규정에 따라 공범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내린다.제10조 안전사고 발생 후 직접 담당하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가 의도적으로 긴급구조를 방해함으로 인해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하였거나 법률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은닉, 유기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구조를 받을 수 없어 사망하였거나 중도장애가 발생한 경우 각각 형법 제232조,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살인죄 또는 고의상해죄로 정죄하고 처벌을 내린다.제11조 인신보호, 재산안전 관련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안전설비를 생산하거나 안전설비가 인신보호, 재산안전 관련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전설비를 판매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형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표준 미달 제품 생산•판매죄로 정죄하고 처벌을 내린다.제12조 형법 제132조, 제134조~제39조(1)에 규정한 범죄행위를 실시하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적 한도 내에서 중처벌을 내린다.(1) 법에 따라 안전허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허가증이 기한만료, 일시적 압수, 취소, 말소된 상황하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한 경우;(2) 필요한 안전 모니터링 및 경보 설비의 작동을 중지시켰거나 파괴한 경우;(3) 이미 발견한 잠재적 사고 위험에 대해 관련 부서 또는 개인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4) 1년 내에 생산안전 위해(危害) 불법 범죄활동으로 인해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5) 허위조작, 뇌물공여 등 수단을 취하여 안전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의도적으로 회피 또는 방해한 경우;(6) 안전사고 발생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빼돌린 경우;(7) 법적 한도 내에서 중처벌을 내려야 하는 기타 경우.전 항 제(5)호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하였고 이와 동시에 형법 제389조에 규정한 범죄를 구성하는 하는 경우 병과주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제13조 형법 제132조, 제134조~제139조(1)에 규정한 범죄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 긴급구조를 적극 계획하고 참여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주동적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 정상참작하여 법적 한도 내에서 경처벌을 내릴 수 있다.제14조 국가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생산경영에 지분을 투자하여 이 해석에 규정한 관련 범죄를 구성하거나 국가공무원의 횡령, 뇌물수수 범죄행위가 안전사고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 법적 한도 내에서 중처벌하며; 동시에 횡령, 뇌물수수 범죄 및 생산안전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병과주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제15조 국가공무원이 안전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범하여 공공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이 초래되었거나 사리도모를 위하여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형사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였고 그 경위가 심각한 경우 각각 형법 제397조, 제402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또는 사리도모를 위한 형사사건 불(不)이송죄로 정죄하고 처벌을 내린다.회사•기업•사업기관의 업무인력이 법에 따라 또는 위탁을 받아 안전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를 범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9장 직무유기죄 주체의 적용 문제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의 규정에 따라 직무유기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제16조 집행유예를 적용받는 생산안전 위해(危害) 범죄자의 경우 그 범죄 상황에 근거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안전생산과 관련된 특정 활동을 금지할 수 있으며;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범죄 정황과 재범죄 예방의 수요에 따라 형벌 집행 완료일 또는 가석방일로부터 3년내지 5년 내에 안전생산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제17조 이 해석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 시행 후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광산 생산안전 위해(危害) 형사사건 처리의 구체적인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법석[2007]5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사법해석 및 규범성문건상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아니한 내용은 이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세무행정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진일보 추진시키고,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의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이에 공표한다.특별히 공고한다.첨부: 1. 비주민납세자 세수주민신분정보 보고서(기업에 적용)2. 비주민납세자 세수주민신분정보 보고서(개인에 적용됨)3.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기업소득세 A표)4.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개인소득세 A표)5.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기업소득세 B표)6.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개인소득세 B표)7.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기업소득세 C표)8.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개인소득세 C표)9.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기업소득세 D표)10.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개인소득세 D표)11. 폐지문건내용명세표첨부 다운로드:<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65/n1465977/n1466022/c1949446/content.html>국가세무총국2015년 8월 27일 |  |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危害生产安全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危害生产安全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已于2015年11月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65次会议、2015年12月9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十二届检察委员会第44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12月16日起施行。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2015年12月14日 为依法惩治危害生产安全犯罪，根据刑法有关规定，现就办理此类刑事案件适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 刑法第一百三十四条第一款规定的犯罪主体，包括对生产、作业负有组织、指挥或者管理职责的负责人、管理人员、实际控制人、投资人等人员，以及直接从事生产、作业的人员。　第二条 刑法第一百三十四条第二款规定的犯罪主体，包括对生产、作业负有组织、指挥或者管理职责的负责人、管理人员、实际控制人、投资人等人员。 第三条 刑法第一百三十五条规定的“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是指对安全生产设施或者安全生产条件不符合国家规定负有直接责任的生产经营单位负责人、管理人员、实际控制人、投资人，以及其他对安全生产设施或者安全生产条件负有管理、维护职责的人员。　　第四条 刑法第一百三十九条之一规定的“负有报告职责的人员”，是指负有组织、指挥或者管理职责的负责人、管理人员、实际控制人、投资人，以及其他负有报告职责的人员。 第五条 明知存在事故隐患、继续作业存在危险，仍然违反有关安全管理的规定，实施下列行为之一的，应当认定为刑法第一百三十四条第二款规定的“强令他人违章冒险作业”： （一）利用组织、指挥、管理职权，强制他人违章作业的； （二）采取威逼、胁迫、恐吓等手段，强制他人违章作业的； （三）故意掩盖事故隐患，组织他人违章作业的； （四）其他强令他人违章作业的行为。 第六条 实施刑法第一百三十二条、第一百三十四条第一款、第一百三十五条、第一百三十五条之一、第一百三十六条、第一百三十九条规定的行为，因而发生安全事故，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认定为“造成严重后果”或者“发生重大伤亡事故或者造成其他严重后果”，对相关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一）造成死亡一人以上，或者重伤三人以上的； （二）造成直接经济损失一百万元以上的； （三）其他造成严重后果或者重大安全事故的情形。 实施刑法第一百三十四条第二款规定的行为，因而发生安全事故，具有本条第一款规定情形的，应当认定为“发生重大伤亡事故或者造成其他严重后果”，对相关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实施刑法第一百三十七条规定的行为，因而发生安全事故，具有本条第一款规定情形的，应当认定为“造成重大安全事故”，对直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实施刑法第一百三十八条规定的行为，因而发生安全事故，具有本条第一款第一项规定情形的，应当认定为“发生重大伤亡事故”，对直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第七条 实施刑法第一百三十二条、第一百三十四条第一款、第一百三十五条、第一百三十五条之一、第一百三十六条、第一百三十九条规定的行为，因而发生安全事故，具有下列情形之一的，对相关责任人员，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一）造成死亡三人以上或者重伤十人以上，负事故主要责任的； （二）造成直接经济损失五百万元以上，负事故主要责任的； （三）其他造成特别严重后果、情节特别恶劣或者后果特别严重的情形。 实施刑法第一百三十四条第二款规定的行为，因而发生安全事故，具有本条第一款规定情形的，对相关责任人员，处五年以上有期徒刑。 实施刑法第一百三十七条规定的行为，因而发生安全事故，具有本条第一款规定情形的，对直接责任人员，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实施刑法第一百三十八条规定的行为，因而发生安全事故，具有下列情形之一的，对直接责任人员，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一）造成死亡三人以上或者重伤十人以上，负事故主要责任的； （二）具有本解释第六条第一款第一项规定情形，同时造成直接经济损失五百万元以上并负事故主要责任的，或者同时造成恶劣社会影响的。 第八条 在安全事故发生后，负有报告职责的人员不报或者谎报事故情况，贻误事故抢救，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认定为刑法第一百三十九条之一规定的“情节严重”： （一）导致事故后果扩大，增加死亡一人以上，或者增加重伤三人以上，或者增加直接经济损失一百万元以上的； （二）实施下列行为之一，致使不能及时有效开展事故抢救的： 1.决定不报、迟报、谎报事故情况或者指使、串通有关人员不报、迟报、谎报事故情况的； 2．在事故抢救期间擅离职守或者逃匿的； 3．伪造、破坏事故现场，或者转移、藏匿、毁灭遇难人员尸体，或者转移、藏匿受伤人员的； 4．毁灭、伪造、隐匿与事故有关的图纸、记录、计算机数据等资料以及其他证据的； （三）其他情节严重的情形。 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认定为刑法第一百三十九条之一规定的“情节特别严重”： （一）导致事故后果扩大，增加死亡三人以上，或者增加重伤十人以上，或者增加直接经济损失五百万元以上的； （二）采用暴力、胁迫、命令等方式阻止他人报告事故情况，导致事故后果扩大的； （三）其他情节特别严重的情形。 第九条 在安全事故发生后，与负有报告职责的人员串通，不报或者谎报事故情况，贻误事故抢救，情节严重的，依照刑法第一百三十九条之一的规定，以共犯论处。 第十条 在安全事故发生后，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故意阻挠开展抢救，导致人员死亡或者重伤，或者为了逃避法律追究，对被害人进行隐藏、遗弃，致使被害人因无法得到救助而死亡或者重度残疾的，分别依照刑法第二百三十二条、第二百三十四条的规定，以故意杀人罪或者故意伤害罪定罪处罚。第十一条 生产不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安全设备，或者明知安全设备不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而进行销售，致使发生安全事故，造成严重后果的，依照刑法第一百四十六条的规定，以生产、销售不符合安全标准的产品罪定罪处罚。第十二条 实施刑法第一百三十二条、第一百三十四条至第一百三十九条之一规定的犯罪行为，具有下列情形之一的，从重处罚： （一）未依法取得安全许可证件或者安全许可证件过期、被暂扣、吊销、注销后从事生产经营活动的； （二）关闭、破坏必要的安全监控和报警设备的； （三）已经发现事故隐患，经有关部门或者个人提出后，仍不采取措施的； （四）一年内曾因危害生产安全违法犯罪活动受过行政处罚或者刑事处罚的； （五）采取弄虚作假、行贿等手段，故意逃避、阻挠负有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实施监督检查的； （六）安全事故发生后转移财产意图逃避承担责任的； （七）其他从重处罚的情形。 实施前款第五项规定的行为，同时构成刑法第三百八十九条规定的犯罪的，依照数罪并罚的规定处罚。 第十三条 实施刑法第一百三十二条、第一百三十四条至第一百三十九条之一规定的犯罪行为，在安全事故发生后积极组织、参与事故抢救，或者积极配合调查、主动赔偿损失的，可以酌情从轻处罚。第十四条 国家工作人员违反规定投资入股生产经营，构成本解释规定的有关犯罪的，或者国家工作人员的贪污、受贿犯罪行为与安全事故发生存在关联性的，从重处罚；同时构成贪污、受贿犯罪和危害生产安全犯罪的，依照数罪并罚的规定处罚。第十五条 国家机关工作人员在履行安全监督管理职责时滥用职权、玩忽职守，致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受重大损失的，或者徇私舞弊，对发现的刑事案件依法应当移交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而不移交，情节严重的，分别依照刑法第三百九十七条、第四百零二条的规定，以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徇私舞弊不移交刑事案件罪定罪处罚。公司、企业、事业单位的工作人员在依法或者受委托行使安全监督管理职责时滥用职权或者玩忽职守，构成犯罪的，应当依照《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九章渎职罪主体适用问题的解释》的规定，适用渎职罪的规定追究刑事责任。第十六条 对于实施危害生产安全犯罪适用缓刑的犯罪分子，可以根据犯罪情况，禁止其在缓刑考验期限内从事与安全生产相关联的特定活动；对于被判处刑罚的犯罪分子，可以根据犯罪情况和预防再犯罪的需要，禁止其自刑罚执行完毕之日或者假释之日起三年至五年内从事与安全生产相关的职业。第十七条 本解释自2015年12月16日起施行。本解释施行后，《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危害矿山生产安全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法释〔2007〕5号）同时废止。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此前发布的司法解释和规范性文件与本解释不一致的，以本解释为准。为进一步推进税务行政审批制度改革，优化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的管理，国家税务总局制定了《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管理办法》，现予公布。 　 特此公告。　　附件：1.非居民纳税人税收居民身份信息报告表（企业适用）2.非居民纳税人税收居民身份信息报告表（个人适用）3.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企业所得税A表）4.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个人所得税A表）5.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企业所得税B表）6.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个人所得税B表）7.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企业所得税C表）8.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个人所得税C表）9.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企业所得税D表）10.非居民纳税人享受税收协定待遇情况报告表（个人所得税D表）11.废止文件内容明细表　　 附件下载：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65/n1465977/n1466022/c1949446/content.html>国家税务总局2015年8月27日 |